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6. 1 선고 2019가단82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장동찬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5. 4.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0. 6. 25. 그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593,173원을 삭제하고, 이를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배당이의로 피고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배당금지급채권 양도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원고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가단7148]를 제기하였으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판사 남인수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가. 피고와 소외 B []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 []에게 별지 2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별지 2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한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1. 가. 피고와 소외 B []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1,593,17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21,593,17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나. 원고는 소의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 합니다)과 2014. 7.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이라 합니다), 소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 이라고 합니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보증서 및 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각 참조).

- 아 래 -

보증 내용	보증번호	F
	보증금액	50,000,000원 (이후 45,000,000원으로 변경)
	보증일자	2014. 7. 8.
	보증기한	2015. 7. 7. (이후 2019. 7. 5.로 최종 변경)
	연대보증인	B

다. 소의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주채무자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라.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 및 소외 B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현재 연 10%입니다(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해 손해금은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2013. 11. 1.부터 2018. 2. 28.까지 원고의 규정상 손해금율은 연 12%, 2018. 3. 1.부터 현재까지 손해금율은 연 10%입니다).

마. 위와 같이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2014. 7. 10.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이후 대출금액(보증금액)을 금 45,000,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원고의 대위변제 등

가. 이후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019. 1. 9. 기업회생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갑 제3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참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5. 10. E은행에 금 45,754,42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등 금 71,770원을 상계처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사고/구상권(특수채권)원장 참조).

나.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2019. 10. 1. 현재 손해금 금 1,814,809원이 발생하였습

니다(갑 제6호증 구상채권현황 참조).

다. 이에 원고가 D 및 소외 B에게 청구할 구상금채권은 총 금 47,709,762원(= 대위변제잔액 금 45,682,651원 + 손해금 금 1,814,809원 + 가(대)지급금 금 212,302원) 이 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구상채권현황 참조).

3. 사해행위

가. 소외 B의 처분행위

위와같이 D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외 B는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18. 11. 28.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합니다),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12. 3. 접수 제240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7호 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

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D 및 소외 B 사이에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2018. 11. 28.)을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 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19. 5. 10. E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D 및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구상금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 (1)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 (2) 소외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치 아니하고 있고, 위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이 원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 (3) 그런데 소외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B는 물론이고 피고의 악의 역시 일용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정된 청구원인

1. 원고는 종전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증복주장을 피합니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어 현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바, 이에 따라 사실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로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어 현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며,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21,593,173원의 배당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갑 제8호증 배당표 참조).

나.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배당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하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91398,91404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배당받은 자들에게 배당금 수령 채권의 양도와 그 양도통지를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참조).

다.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위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배당이 예정된 배당금은 아직까지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피고의 배당금채권 전체를 소외 B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및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제소기간의 제한 또한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마. 한편, 위와 같은 배당금채권의 양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정대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으므로(갑 제9호증 배당기일조서 참조), 사례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경정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정된 청구취지기제에 따른 판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상주시

답 1502.1㎡

2. 경상북도 상주시

대 565㎡

3. 경상북도 상주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1.4㎡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축사 42.2㎡

- 이상 -

별지 2

채권의 표시

피고 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서 소유자로서 소의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급출급청구권.

- 이 상 -